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0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서상열, 신복자,
유정인, 유정희,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의 일환인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와 함께 효율적인 사용 줄이기 캠페인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미래 환경을 위한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3조(시장의 책무 등)의 각 항목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덧붙여 다회용품 사용 권장과 활성화를 포함해 개정함
- 나. 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다회용품 사용 권장 및 활성화와 청소년 시설의 명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줄이기”를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줄이기”를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저감”을 “저감하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도록”을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청소년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u>줄이기</u>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u>줄이기</u>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u>저감</u>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u>않도록</u> 권고할 수 있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 ----- <u>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u>하기 ---- ----.</p> <p>② ----- ----- <u>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u> ----- -.</p> <p>③ ----- ----- <u>저감하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u>----- -----.</p> <p>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u> ---- -----.</p>

1. ~ 4. (생략)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의 일환인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와 함께 효율적인 사용 줄이기 캠페인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문제점 환기와 미래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증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